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3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0940 취득세반환청구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6. 17.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190,200원, 농어촌특별세 419,0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30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5706) 2015. 7. 15. 위 법원으로부터 "B 등은 원고에게 [redacted]구 F 대 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0. 2.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09,5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7,332,850원, 농어촌특별세 419,020원, 지방교육세 628,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31.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이 2010. 2. 14.이므로 기납부한 세금에서 취득세 4,190,200원, 농어촌특별세 419,020원은 이미 징수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등의 경우는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원인이 취득시기가 될 수 없으며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어머니 G의 소유였는데, G은 생전인 2010. 2. 14. 가족들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30

모인 자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후 G은 2013. 6. 12. 사망하였는데 생전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려하였으나 B가 연락이 두절되어 G의 상속인인 B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취득세의 경우 사실상 취득한 때가 취득시기가 되므로 G의 생전 증여일인 2010. 2. 14.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볼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4,190,200원, 농어촌특별세 419,020원은 징수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G이 생전인 2010. 2. 14.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G이 2013. 6. 12.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들인 원고 및 B 등 5인에게 각 1/5지분씩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B 등에게 상속된 합계 4/5지분은 관련 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30

결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무렵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3) 그렇다면 G의 생전 증여일인 2010. 2. 14.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30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30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생략]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끝>